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9
----------	------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의 신설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의 소유주택(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 신설 (안 제5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토록 한 종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감면 목적상 합리적으로 조정 (안 14조)
- 다. 감면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서식을 신설 (안 제23조)
- 라.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여 소급 적용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6609(2006.10.31), 6674(2006.11.02),
-0187(2007.02.20), 0788(2007.04.1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07.5.11 ~ 2007.5.31)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문

「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후자시설·관광휴게시설(그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 1,000분의 0.75
2. 토지 : 1,000분의 0.7 (다만,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1구내에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
3. 건축물 : 1,000분의 1.25

제10조(문화지구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문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로 승인한 제1종 권장시설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의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

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로 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6장 보칙

제2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종 로 구

수 신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
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장사유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